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위원회위원의 전원 분리선임〉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1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7.
3. 회 부 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하고있으나 나머지 감사위원회위원은 3%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뒤 그중에 다시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감시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권익보호·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경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7제3항 및 제542조의12제2항).

Ⅲ. 검토의견

□ 현행법(2026. 7. 기준)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¹⁾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2026. 9. 10. 이후는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²⁾

○ 원칙적인 형태인 감사위원회(제415조의2제1항)는 이사회 내 위원회(제393조의2)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임.³⁾ 또한 제542조의12제1항⁴⁾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일괄하여 선임(1단계-이사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2단계-감사위원회위원 선임)

1)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4)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하게 됨(이사 일괄선임방식).

- 다만, 같은 조 제2항⁵⁾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적어도 1명(2026. 9. 10. 이후는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당초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1단계)하도록 규정(이사 분리선임방식)하고 있는바, 이는 이사 선임시부터 3%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적용⁶⁾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⁷⁾ 2020년 개정시 도입되었음.⁸⁾

□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해당 감사위원회⁹⁾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542조의12제2항).

5) 「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6)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통상적인 이사 선임 시에는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2단계의 일괄선임방식에 따를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사 pool 자체가 대주주의 의사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음.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6223호, 2020. 12. 9. 본회의 의결, 2020. 12. 29. 공포)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제는 대주주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9)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 감사위원회(제415조의2제1항)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례 감사위원회(제542조의11제1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제542조의12(감사위원 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542조의11제1 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를 선임한 후 선임 된 이사 중에서 감 사위원회위원을 선 임하여야 한다. 다 만, 감사위원회위 원 중 1명(정관에 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으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인 원으로 한다)은 주 주총회 결의로 다 른 이사들과 분리 하여 감사위원회위 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 회의 구성 등) ① (좌동) ② 제542조의11제1 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 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 들과 분리하여 선 임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 회의 구성 등) ① (좌동) ② 제542조의11제1 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를 선임한 후 선임 된 이사 중에서 감 사위원회위원을 선 임하여야 한다. 다 만, 감사위원회위 원 중 2명(정관에 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으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인 원으로 한다)은 주 주총회 결의로 다 른 이사들과 분리 하여 감사위원회위 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 9. 10.> ③ 제1항에 따른
③ 제1항에 따른	③ -----	③ 제1항에 따른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 ----- ----- -----감사위원회위원----- ----- ----- ----- -----.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	④ ~ ⑧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을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u>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u>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u>		을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u>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u><시행 2025. 7. 22.></u> ⑤ · ⑥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u>준용한다.</u> <u><시행 2025. 7. 22.></u>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u>의 특수관계인, 그</u> <u>밖에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자가 소유</u> <u>하는 주식을 합산</u> <u>한다.</u> ⑧ (생 략)		⑧ (개정안 발의 당 시 현행법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이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분리선임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시 최소 1명(2026. 7.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재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공포 2025. 9. 9, 시행 2026. 9. 10.)에 따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최소 2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제542조의12 제2항)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 중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안 제542조의7제3항·제4항은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공포 2025. 9. 9., 시행 2026. 9. 10.) 제542조의7제3항·제4항¹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상장회 사가 정관으로 집 중투표를 배제하거 나 그 배제된 정관 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 여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 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좌동) ③ 제2항의 상장회 사는 제382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 를 배제할 수 없다.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좌동) ③ 제2항의 상장회 사는 제382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 를 배제할 수 없다. <시행 2026. 9. 10.>
④ 제2항의 상장회	<삭 제>	<삭 제>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 항에 따른 집중투 표 배제에 관한 정 관 변경에 관한 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 에 관한 의안과 별 도로 상정하여 의 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 9. 10.>

문 의 처

02)6788-5055

- 10) 「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26. 9. 10.)」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 ④ 삭제